법인콘도 회원권 운영 지침

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

제정 2023. 6. 30. 지침 제403호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 회원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법인콘도"란 심사평가원이 회원권을 구매하여 보유 중인 숙박시설을 말한다.
 - 2. "여름성수기 운영객실"이란 7~8월 중 법인콘도 시설별로 회원사 추첨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배정된 객실을 말한다.
- 제3조(관리부서) 법인콘도 회원권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부서는 「직제규정 시행세칙」 별표 5에 따라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로 한다.
- 제4조(이용대상) ① 법인콘도 이용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 이라 한다)에 재직 중인 임직원(계약직, 기간제, 파견직 근로자, 휴직자, 휴가자, 파견자 포함) 본인에 한하며, 실제 이용인원에도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에 따라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법인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.
- 제5조(이용박수) ① 법인콘도 개인별 연간(1월부터 12월까지) 이용박수는 전체 시설을 합산하여 최대 12박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시설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특정

- 시설에 대한 개인별 연간 이용박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은 1인 1실, 시설별·일자별로 배정된 박수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이용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6조(이용신청) 법인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인 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여름성수기 운영객실: 관리부서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신청
 - 2.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외: 이용시작일 5일전~60일전 신청
- 제7조(이용자 선정) ① 법인콘도 이용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1. 여름성수기 운영객실: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(감사 담당부서 입회) 선정 후 잔여객실에 대해서는 선착순 선정
 - 2.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외: 선착순 선정
 - ② 관리부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자 선정 결과를 법인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.
 - ③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이용자 선정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이용 및 취소) ① 법인콘도 이용 시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법인콘도 이용 취소는 법인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취소 기한 및 수수료는 시설별 규정에 따른다.
- 제9조(이용자 부담) 법인콘도 이용자는 법인콘도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.
 - 1. 법인콘도 회원가로 책정된 객실료와 부대시설 이용료
 - 2.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비용
 - 3. 이용 취소 시 시설별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
- 제10조(업무위탁)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업무를 대행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제재조치) ①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

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법인콘도 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: 해당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간 이용 불가
- 2. 법인콘도 이용자가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중대하여 시설에서 해당내용을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경우: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가 이용 불가
- 3. 시설별 규정에 따른 취소기한 경과 후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: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 불가
- 4. 이용당일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입실하지 않는 경우: 해당일로 부터 6개월간 및 익년도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 불가
-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별도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 - 1. 긴급사고, 응급치료, 천재지변, 감염병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
 - 2. 이용자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
 - 3. 운송기관의 파업·휴업·결항 등으로 시설로의 이동이 불가한 경우
- 4.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(사후관리) ①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회원권 이용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 담당부서는 정기감사 시 법인콘도 이용의 적정성 및 규정 위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<지침 제403호, 2023. 6. 30.>

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